

#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20. . .   |
| 발 의 자 | 이선우 의원 외 5명 |

#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(이선우 의원 대표 발의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20. . .

발 의 자 : 이선우 · 권재욱 · 김재우 · 안주찬  
이지연 · 홍난이 의원(6인)

### 1. 제안이유

구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,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책무(안 제1조~제3조)

나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종합복지서비스 제공, 지원사업, 복지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
(안 제5조~제7조)

라.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시설, 법인 또는 단체 등에  
대한 재정지원(안 제8조)

마.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9조)

바.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3조)

사.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,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
(안 제14조~제15조)

### 3. 조 례 안 : 붙임

### 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 
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,  
「평생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##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,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발달장애인”이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 등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”(이하 “종합복지서비스”라 한다)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, 상담, 재활, 교육, 직업훈련, 고용, 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,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구미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

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
2.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
3.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
4.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
5.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7.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8.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달장애인 단체,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, 관련 연구기관, 전문가 등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)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,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사업

가.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

나.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

다.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

라.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 사업

2.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

가.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

나.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

다.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

라.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

마.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

바.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·주간활동·돌봄 지원 사업

3.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

가.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사업

나.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

다.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사업

4.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
제7조(복지시설 확충 등)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 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, 확대 및 지원  
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,  
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 
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은 「구미시 지방  
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 
관한 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(이하  
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「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 
조례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0조(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)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  
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
(이하 “평생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평생교육센터의 업무)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 
수행한다.

1.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
2.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, 상담 및 홍보
3. 고도 비만, 중복 장애 등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
4. 인문교양, 직업능력 향상, 기초문해, 문화예술, 학력보완 및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5.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2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다.

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및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(지도·감독)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

하여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으며,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및 시설, 보호자단체, 교육기관,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5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발달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.

가. 지적장애인 :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

나. 자폐성장애인 : 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·신체표현·자기조절·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

다.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2. “보호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3호의 보호자(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)

나.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

다.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

라.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(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)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,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.

## 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- 제35조(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인 거주시설 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·요양·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 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
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## 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~④ 생략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## 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

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## □ 「평생교육법」

-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- 본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대한 지원 및 정책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원을 위한 재정 수반 요인이 있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 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의 비용 발생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제3조(시장의 책무) 및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에 의거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방향 및 지원계획을 수립 한 이후 세부지원계획이 명확히 세워진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정확한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.

## 4. 작성자

- 사회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신미현(480-5172)